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8
------	-----

2011. 6. 24.  
재정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21일,

김문수·김용석(도봉1)·서윤기의원의외 22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1.6.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한-EU FTA 비준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친환경 농축산물 무상급식 등 FTA와 상충되는 서울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
- 또한, 한-EU FTA에서 유럽 27개 나라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한국 유통시장 진출에 아무런 조건과 제한을 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나. 주요내용

- 한-EU FTA는 정부 조달 부문에서 국산 농산물의 우선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어 한-EU FTA 발효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등에 유럽산 돼지고기 등의 사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산업정책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27개국의 글로벌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 즉각적인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시민을 대표하여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함.

## Ⅲ.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 Ⅳ. 이송처 : 국회, 외교통상부

## Ⅴ.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가. 결의안의 개요

- 본 결의안은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비준되어 7월 1일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가 서비스 시장 개방 의무에 따라 상생법과 유통법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고,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를 실시하지 못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등 지역 기업 지원 활동도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임.

## 나. 한-EU FTA 추진경과

- 2003년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상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2006년 7월 제1차 예비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에 따라, 2007년 5월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고, 이후 2009년 3월까지 8차례 협상을 거쳐 2009년 7월 한-스웨덴 정상회담시에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음.
-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동의안에 통과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1일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협정문은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를 비롯해 모두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27개 회원국 사이에 효력이 발생함.
- 잠정 발효 이후 EU는 개별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해 정식 발효까지 통상 2~3년(EU-칠레 FTA의 경우 2년 4개월 소요)이 소요되어 향후 2~3년 뒤에 정식발효될 것으로 기대함.

## 라. FTA 발효 이후 우려되는 주요 협정사항

- 현재 각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서 한-EU FTA 협정문 가운데 주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은 학교 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문제, 상생법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 문제 등임.
- 우선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에는 학교급식 예외 규정이 없어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는 것임.
- 한-EU FTA 협정문상 무상급식은 ‘정부조달’에 해당되어, 식자재 구매와 관련해 특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이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시행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급식비를 민간이 부담하는 민간차원으로 판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임.
- 이와 관련해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정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U가 우리의 학교급식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문제는 기존의 WTO 보조금협정의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에 추가해 ① 기간 또는 양적 측면에서 무제한적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과 ② 상당한 자구 노력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임.
- 이 밖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상생법과 유통법의 규정이 외국인 투자 금지 철폐 및 식품소매업 품목에 대한 개방 등과 맞물려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마. 결의안 취지

- 7월 1일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 협정문은 학교급식,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SSM, 유럽산 쇠고기 검역, 자동차 안전기준, 의약품 가격, 보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식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본 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문제,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효력 제한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 등은 서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등 유효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의회가 이에 앞서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인을 보호를 위한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결의하는 것은 EU와의 FTA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7건의 다른 FTA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임.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II. 토론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IX.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98
----------	-----

발의연월일 : 2011년 6월 21일

발 의 자 : 김문수김용석(도봉1)서윤기 의원 외 22명

### 1. 제안 이유

- 한-EU FTA 비준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친환경 농축산물 무상 급식 등 FTA와 상충되는 서울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
- 또한, 한-EU FTA에서 유럽 27개 나라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한국 유통시장 진출에 아무런 조건과 제한을 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2. 주요 내용

- 가. 한-EU FTA는 정부 조달 부문에서 국산 농산물의 우선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어 한-EU FTA 발효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등에 유럽산 돼지고기 등의 사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 나. 또한,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산업정책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다.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27개국의 글로벌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 즉각적인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라.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시민을 대표하여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4. 이송처 : 국회, 외교통상부,

##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FTA와 상충되는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한-EU FTA는 정부 조달 부문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FTA 발효시 국내에 유통중인 유럽산 돼지고기 등이 급식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업 보조금 금지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향토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체제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산업정책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정책 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 500만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한-EU FTA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한-EU FTA <서비스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wholesale trade services)”, “소매(retailing trade services)”, “프랜차이징(franchising)” 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 장치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기업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하도록 (“None - 제한없음”)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중소 매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결국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27개국의 글로벌 유통 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하여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 즉각적인 제소가 가능하다.

이에 1,000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보호되고 전국의 500만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EU FTA의 재협상 촉구를 결의한다.

2011.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